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이주현】

가. 제안이유

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3항 신설
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 가능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.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3항 신설하는 내용임.
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 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·관리하게 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의류수거함을 깨끗하게 개선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의류수거함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 무단투기장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관리부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